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1.



김태형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김태형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위·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.
-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,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3조제1항을 재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,
-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“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”를 “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”로 변경하였으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1년 1월 14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태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00821005
--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1. 1. 14.

발의자: 김태형, 박정환, 이영빈, 안대국,
윤권근, 김화덕, 원종진, 홍복조

1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위·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.
-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,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(안 제3조 제1항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가. 사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- 나. 근거: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”를 “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」에 따라 시설 관리·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운영 등)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 도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을 갱신 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</p>	<p>제3조(운영 등)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」에 따라 시설 관리·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-----</p>

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조례에 따른다. 다만,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, 위탁조건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